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엠씨넥스(이하 "회사"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본 규정에 의한다.

제 3 조(권 한)

1.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본 규정에 열거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2.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제2장 구 성

제 4 조(구 성)

1.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제 5 조(의 장)

1. 이사회는 매년 정기주주총회 후 개최되는 최초의 이사회에서 임기 1년의 이사의 의장을 선임한다.
2. 의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 중에서 의장직무를 대행할 임시의장을 지명할 수 있다.
3. 이사회는 의장이 임시의장을 지명하지 않고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를 대비하여, 의장을 대신하여 의장직무를 대행할 이사의 순서를 정할 수 있다.

제 6 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이사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고문, 상담역 및 관계 실무직원을 출석시켜 안건에 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3 장 회 의

제 7 조 (종 류)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2.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 7 조 (종 류)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2.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 종료 후 45 일 내에 개최한다.
3.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 8 조 (소집권자)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9 조 (소집절차)

1.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적어도 회의개최 7 일 전에 각 이사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2.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 1 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 10 조 (이사의 결의방법)

1. 이사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 397 조의 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및 제 398 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2. 이사의 의결권은 각 1 개의 의결권을 가지며, 의결권은 대리하지 못한다.
3. "특수관계자에대한통제규정", "관계회사에대한통제규정", "업무무관거래규정"에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른다.
4.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5. 이사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11 조 (부의사항)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1) 주주총회 소집
- 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허용
- 3) 영업보고서의 승인
- 4) 재무제표의 승인
- 5) 정관의 변경
- 6) 자본의 감소
- 7)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 8)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 9)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 10)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해임
- 11) 현금, 주식, 현물배당 결정
- 1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13) 이사의 보수
- 14)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변경
- 2) 신규사업의 추진
- 3)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4) 대표이사 유고 시 직무 대행자 선임
- 5) 공동대표의 결정
- 6)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 7)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8)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 9)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 10)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 11)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3. 재무에 관한 사항

- 1) 투자에 관한 사항
 - 2) 중요한 계약의 체결
 -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 4) 결손의 처분
 - 5)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
 - 6) 신주의 발행
 - 7) 사채의 발행
 - 8) 준비금의 자본전입
 - 9) 전환사채의 발행
 - 10)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11)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 12) 자기주식의 소각
4. 이사 등에 관한 사항
-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변경
 - 2)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 3) 이사의 타회사 임원 겸임
5. 기타
-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 3)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12 조 (보고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1. 이사회 결의사항과 집행경과 및 결과
2. 기타 이사회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제 13 조 (의안의 제출)

이사회에 부의하여야 할 의안에 관한 보고문서는 이사회 개최일 3 영업일 전까지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4 조 (의사록 작성)

서식

주식회사 엠씨넥스

A4(210mm X 297mm)

1.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 15 조 (이사회 사무국)

1. 이사회는 이사회 업무 담당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으며, 사무국은 이사회 지시에 따라 이사회 소집통지, 부의안건과 정리 및 배포, 의사록 작성과 부의안건의 사후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케 할 수 있다.
2. 사무직 직원은 소속직원을 인사발령하여 해당업무를 수행케 할 수 있다.

제 4 장 이사회 내 위원회

제 16 조 (이사회내 위원회)

1. 이사회는 이사회 판단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이사회내 위원회를 신설할 수 있다.
 - 가. 감사위원회
 - 나.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 다. 경영전략위원회
 - 라. 리스크관리위원회
 - 마. ESG 위원회
 - 바. 제도개선위원회
 - 사. 인사위원회
 - 아. 예산심의위원회
2.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서 정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9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4년 5월 20일부로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6년 5월 27일부로 개정하여 시행한다.